

[별표 2]

무인비행장치 조종자(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) 과정 훈련기준

1. 교관

가. 지도조종자

- (1)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
- (2) 규칙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(1종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) 증명을 취득한 사람일 것
- (3)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1종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에 대한 조종경력이 1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일 것
- (4) 학과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

나. 실기평가조종자

- (1)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
- (2)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1종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에 대한 조종경력이 1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일 것
- (3)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1종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에 대한 조종경력이 15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사람일 것
- (4) 실기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

2. 교재, 장비 및 시설

가. 학과교육 교재

- (1) 기본 교과서(참고서 포함)
- (2) 비행규정(무인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) :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

나. 교육훈련장비

인가 받은 교육과정별 훈련용 무인비행장치(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

터) 1·2·3종 및 모의비행훈련장치 각 1대 이상 보유.

#### 다. 학과교육 훈련시설

(1)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,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- 강의실 또는 열람실, 사무실
- 채광시설, 조명시설, 환기시설, 냉난방시설, 위생시설
- 실습,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

(2) 단위시설의 기준

- 강의실 : 면적은 3m<sup>2</sup> 이상이며 1m<sup>2</sup>당 1.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,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, 책상·의자·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.
- 사무실: 면적은 3m<sup>2</sup> 이상일 것
- 채광시설, 조명시설,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
-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,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

(3)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,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.

(4) 제반 학과교육 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

#### 라. 실기교육 훈련시설

(1) 실기교육 훈련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, 임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(이 경우 「농지법」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)

(2)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

(3) 실기교육 훈련시설에 교육 및 훈련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 없을 것

(4) 실기교육 훈련시설의 노면은 해당 분야 비행장치 이·착륙 등 비행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유지되고 배수상태가 양호할 것

(5) 비행훈련 중 교관과 교육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종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것

(6)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,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

- (7) 풍향, 풍속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
- (8) 실기교육 훈련시설 출입구에 목적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
- (9) 인접한 의료기관의 명칭, 장소의 약도 및 연락처 등 비상시 의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 비치되어 있을 것

3.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

가. 학과교육 :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,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교 육 과 목	교 육 시 간
1. 항공법규	2
2. 항공기상	2
3. 항공역학(비행이론)	5
4. 비행운용 이론	11
계	20시간

나. 모의비행교육 : 실기교육 전까지 지정 받은 교육과정의 종류(1·2·3종)에 따라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모의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비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교 육 시 간	비고
1종	20	
2종	10	
3종	6	

다. 실기교육 : 지정 받은 교육과정의 종류(1·2·3종)에 따라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교관의 동반 또는 감독 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과 목	교관동반 비행시간			단독 비행시간		
	1종	2종	3종	1종	2종	3종
1. 이착륙	2	1	0.5	3	2	1
2. 공중 조작	2	1	0.5	3	2	1
3. 지표부근에서의 조작	3	1	0.5	6	2	2
4. 비정상 및 비상절차	1	1	0.5	-	-	-
계	8시간	4시간	2시간	12시간	6시간	4시간